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. 7. 14 선고 2020가단45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7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90. 5. 24. 접수 제60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정지원

별지